



|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 |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당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시설 포함여부

Q 교육연수원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정수용으로 여과시설(모래,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과시설에서 발생하는 역세수가 폐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포함이 된다면 어느 배출시설에 포함이 됩니까? 위의 시설이 방지시설 면제대상에 포함되어 역세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법령 및 과거 삭제된 항목도 포함)

A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78번 정수시설이 정수능력 100m³/일이상이고 일정량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는 1일 최대 0.01m³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는 1일 최대 0.1m³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역세수인 폐수는 별도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에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1일 최대폐수량이 20m³이하의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항상배출허

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의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청시 방류구별로 신청 여부

Q 폐수배출시설이 2개이며 A는 1처리장으로, B는 2처리장으로 배출됩니다.

A,B 전체 배출시설에서는 100분의50의 폐수가 증가되지 않으나 B 배출시설 하나로 보면 100분의50 이상의 폐수가 증가합니다.

변경신고시 각각의 방류구의 허가량(1방류구)을 기준으로 변경해야되는지, 전체(1,2방류구 합산)를 기준으로 변경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는 폐수배출시설을 82개 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하는 시설 등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 보다 100분의 50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증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수배출량의 증가는 허가(신고) 받은 각각의 배출시설별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대기종변경 관련

Q 인천에 있는 자동차제조업 사업장입니다. 허가시설인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용량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시설의 종별이 기존 4종에서 2종이 됩니다.

담당구청에 문의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설치가 제한된다고 합니다. 당사는 현재 2종은 물론, 1종~5종까지의 시설들이 이미 허가받아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1, 2, 3종의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사의 상황에는 불합리한 것 같아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A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종을 재산정한 결과 입지제한에 해당되는 종으로 상향된 경우 기존에 설치된 시설은 입지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종 산정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먼지, SOx, NOx) 배출시설의 증설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시설 대체로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변경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변경 전 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량 이하로 배출될 경우에는 시설의 변경(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파트 주변 공장 소음

Q 기존에 있던 공장 옆에 신축한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저층의 경우 기존 공장의 방음벽(3층 높이)으로 인해 소음이 덜하나, 5층 이상의 경우 24시간 Full 가동되는 공장의 소음 때문에 한 여름에 문을 열지 못합니다. 문을 닫고 살자니 덥고, 새집증후군 냄새에 죽겠고, 열고 살자니 공장 소음과 악취때문에 죽겠습니다.

새집 분양 받아서 기분 좋은 것도 잠시,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반은 입주민들의 경우 집값 떨어질까봐 쉬쉬하지만, 만삭인 아내와 당장 태어날 아기가 소음과 냄새에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장소음에 대해 일정 높이 이상의 방음벽이 최소한의 방법일텐데, 그 책임의 주체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분양 당시 쾌적한 환경을 얘기한 건설사인지, 소음원인 공장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 건설교통부 소관법률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9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dB(1층과 5층의 평균소음도)이상인 경우 기준이내가 되도록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바, 우선 시공사에 대책수립을 요청하신 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전문가의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보상 및 방음시설 설치등의 분쟁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분쟁조정 신청방법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2110-6984) 또는 서울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02-3707-95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장은 소음진동규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공장부지 경계선에서 측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폐 CD 처리 방법에 대한 문의

Q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재활용하는 업체가 있기는 하나 폐 CD가 몇천장 정도 있을 때

수거해가고, 몇십장 정도의 CD는 배송비 발신자 부담으로 택배로 보내라고 되어있네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하고, 각 가정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1년에 버리는 폐CD를 합해보면 막대한 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D를 그냥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썩지도 않고 환경오염도 될 것 같아 걱정이 되네요.



CD는 재활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분리 배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각가능 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CD가네이트)재질에 알미늄코팅이 되어 있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문제 및 실제 재활용을 하여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보다 재활용 비용이 초과하는 등 재활용 여건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CD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도 새로운 재활용기술 개발 등 재활용 여건이 성숙 된다면 재활용품목에 추가하여 분리수거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3호에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폐수처리계통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 중에 처리수조로 이송하기 전에 폐수가 흘러나가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에 준하여 개선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후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침전조에서 처리수조의 배수불량



당사의 폐수방지시설의 침전조에서 최종방류구 전의 처리수조로 이송되는 배관이 길어서 배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배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다른 배관을 침전조에 설치하여 처리수조로 이송할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신규설치 배관에 가압펌프를 이용할수도 있는지 (강제이송장치입니다)